

경상북도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7037호 2026년 6월 4일(목)

경 상 북 도

■ 고 시

-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09호) 5

회								
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성수2지구(배수장성능개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목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10호) 12
- 포항시 연일 부조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지인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11호) 15

■ 공 고

-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1162호) 18

시 군

■ 고 시

-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고시 제2026-79호) 28
- 김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고시 제2026-80호) 30
- 영주 도시계획시설(공원:광승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26-116호) 39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26-67호) 54
- 영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26-68호) 57

■ 공 고

- 김천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김천시 공고 제2026-1457호) 61
-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고령군 공고 제2026-901호) 63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6-209호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명칭 : 구미 하이테크밸리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 금회사업에 한함

2. 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가. 2-2구역

1) 사업시행자 : (주)구미데이터인프라솔루션 대표이사 오유리

2)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서로1길 27-1, 2층 2에이-76호(형곡동)

나. 4-1구역

1) 사업시행자 : (주)구미하이테크에너지 대표이사 김병선

2)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99, 1312호(송호동, 유성푸르나임 오피스텔)

※ 금회사업에 한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 계획을 변경하여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추진

나. 개요 : 데이터센터 조성 1식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2-2구역

1)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적림리 551번지 일원

2) 면 적 : 68,370.2㎡

나. 4-1구역

1)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도중리 894번지 일원

2) 면 적 : 25,402.7㎡ → 39,238.2㎡ (증 13,835.5㎡)

※ 금회사업에 한함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민영개발

나. 시행기간 : 실시계획(변경)승인일 ~ 2028. 6. 30

※ 금회사업에 한함

※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1-1단계) 준공인가 : 2024. 8. 2. (부산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65호)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변경)

1) 기 정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고
지 식 기 반 제조업	전자·정보(IT)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메카트로닉스(MT)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신소재(NT)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4. 1차금속제품제조업	
	친환경(GT)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하이브리드
탄소산업관련 제조업		C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품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탄소섬유 특화단지
기타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C20129. 양극활물질 제조, C20499 음극활물질 제조 J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 C20129, 양극활물질 제조와 C20499 음극활물질 제조는 유치업종 배치계획상 2-1구역 및 3-1구역에 한하여 허용되며,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계획된 기반시설(용수, 폐수처리, 전력 등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 입주
- ※ J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은 유치업종 배치계획 상 4-1구역에 한하여 허용되며,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계획된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 입주 가능하고, 기반시설(용수, 폐수처리, 전력, 통신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 책임처리

2) 변경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고
지 식 기 반 제조업	전자·정보(IT)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메카트로닉스(MT)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신소재(NT)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4. 1차금속제품제조업	
	친환경(GT)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하이브리드
탄소산업관련 제조업		C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품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탄소섬유 특화단지
기타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C20129. 양극활물질 제조, C20499 음극활물질 제조 J63. 정보서비스업	

- ※ C20129, 양극활물질 제조와 C20499 음극활물질 제조는 유치업종 배치계획상 2-1구역 및 3-1구역에 한하여 허용되며,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계획된 기반시설(용수, 폐수처리, 전력 등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 입주
- ※ J63 정보서비스업은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계획된 기반시설(용수, 폐수처리, 전력 등) 용량 범위 내 입주 가능하고, 기반시설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 책임처리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1) 기 정

구 분	면적(㎡)	1단계(㎡)				2단계(㎡)	구성비 (%)	비 고	
		소계	1-1단계	1-2단계	1-3 단계				
총 계	4,174,102.7	1,895,622.7	1,293,800.5	601,822.2	-	2,278,480.0	100.0		
통합 배치	1 구역 C26, C27, C28, C29	2,009,595.0	-	-	-	-	2,009,595.0	48.1	
	2 구역 C23, C24, C26, C27, C28, C29, C30	810,698.8	689,409.8	352,231.7	337,178.1	-	121,289.0	19.4	
	2-1 구역 C23, C24, C26, C27, C28, C29, C30, C20129, C20499	121,653.0	121,653.0	98,083.4	23,569.6	-	-	2.9	
제한 업종 계획 구역	3 구역 C10, C11, C12, C16, C17, C18, C19, C25를 제외한 업종	830,643.9	830,643.9	721,843.9	108,800.0	-	-	19.9	제한 업종 (30% 이하)
	3-1 구역 C10, C11, C12, C16, C17, C18, C19, C25를 제외한 업종, C20129, C20499	181,617.9	181,617.9	65,874.0	115,743.9	-	-	4.4	
통합 배치	4 구역 D35	177,960.8	30,364.8	30,364.8	-	-	147,596.0	4.3	
	4-1 구역 D35, J63112	25,402.7	25,402.7	25,402.7	-	-	-	0.6	
통합 배치	5 구역 C20	16,530.6	16,530.6	-	16,530.6	-	-	0.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한업종

2) 변경

구 분			면적(㎡)	1단계(㎡)				2단계(㎡)	구성비 (%)	비 고
				소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총 계			4,174,102.7	1,895,622.7	1,293,800.5	601,822.2	-	2,278,480.0	100.0	
통합 배치	1구역	C26, C27, C28, C29	2,009,595.0	-	-	-	-	2,009,595.0	48.1	
	2구역	C23, C24, C26, C27, C28, C29, C30	742,328.6	621,039.6	283,861.5	337,178.1	-	121,289.0	17.8	
	2-1 구역	C23, C24, C26, C27, C28, C29, C30, C20129, C20499	121,653.0	121,653.0	98,083.4	23,569.6	-	-	2.9	
	2-2 구역	J63	68,370.2	68,370.2	68,370.2	-	-	-	1.6	
제한 업종 계획 구역	3구역	C10, C11, C12, C16, C17, C18, C19, C25를 제외한 업종	830,643.9	830,643.9	721,843.9	108,800.0	-	-	19.9	제한 업종 (30% 이하)
	3-1 구역	C10, C11, C12, C16, C17, C18, C19, C25를 제외한 업종, C20129, C20499	181,617.9	181,617.9	65,874.0	115,743.9	-	-	4.4	
통합 배치	4구역	D35	164,125.3	16,529.3	16,529.3	-	-	147,596.0	3.9	
	4-1 구역	J63	39,238.2	39,238.2	39,238.2	-	-	-	0.9	
통합 배치	5구역	C20	16,530.6	16,530.6	-	16,530.6	-	-	0.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한업종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 (변경없음)

8.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등 : 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0. 관계서류는 구미시청 투자유치과(☎054-480-614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6-210호

성수2지구(배수장성능개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성수2지구 수리 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목 적 : 전기실 이전 및 노후 펌프 교체가 필요한 배수장에 성능 개선을 추진하여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사 업 내 용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예정기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성수2	구미	산동	성수	57.8	주펌프 교체 2대 등	1,102	2026. 5. ~ 2027. 12.	

3. 사 업 효 과 : 배수장 성능개선으로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여 영농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의 세목조서 : 붙임참조

6.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054-712-3440)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6-211호

포항시 연일 부조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지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 폐지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폐지사유)

유입량 저하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포항하수처리장 연계처리하여 본 시설은 폐지

2. 폐지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포항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시청로 1

나. 시설 위치 및 면적 등

시 설 명	위 치	시설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공법	가 동 개시일
연일 부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포항시 연일읍 증명리 841-2	72	45	CBR-3FM	2001.12.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해당없음

라. 기타 관계서류는 포항시 하수재생과(054-270-4859)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162호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 도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형위원과 안건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명확히 배제하고, 당사자의 기피신청 및 위원의 회피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전형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 의견제출서식

○ 성명/단체명 :

○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전화 054-880-3126 Fax 054-880-3139, 이메일: ceulser123@korea.kr

붙임 1. 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전형위원회) ①·②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7조(전형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전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1-1. 규제사무명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1-2. 규제유형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강화 <input type="checkbox"/> 존속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1-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자치단체명	경상북도	작성자
	담당부서(과)	문화예술과	
	직급	김교준	
	이름	주무관	
국장	박찬우	연락처	010-7184-3662
과장	박상배	이메일	ceulser123@korea.kr
1-4. 규제조문(근거법규 및 분류)	<p>「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p> <input type="checkbox"/> 개별법 위임규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 규제 <input type="checkbox"/> 기타(특별법·특례 등)		
1-5. 규제의 내용	기존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도립예술단 단원 등의 전형을 위한 전형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는 있으나, 전형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배제하거나,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음.	
	변경	전형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와 관련이 있거나, 친족관계, 증언·자문·연구·용역·감정 등 안건 관여, 대리인 관계 등에 해당 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함. 또한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스스로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회피하도록 규정함.	
1-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위원	
	이해당사자	도립예술단 단원 등 전형 응시자, 도립예술단, 경상북도	
1-7. 비용대비 편익 또는 효과 요약	<p><비용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위원회에 제척사유 확인 및 회피의무 등 절차적 의무 발생 - 별도 금전적 비용 없음 - 추가 인력·예산 소요 없음 - 기존 전형위원회 운영 절차 내 처리 가능 		
	<p><편익 또는 효과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응시자의 절차적 권익 보호 - 이해충돌 가능성 사전 차단 - 전형 결과에 대한 민원·분쟁 예방 - 도립예술단 운영의 공공성 및 행정 신뢰도 제고 		
1-8. 일몰설정 여부	일몰설정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존속기한 미설정 <input type="checkbox"/> 존속기한 설정	
	존속기한·사유	<p>본 규정은 전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한 기본적 절차 규정으로서,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적용할 성질의 규제가 아니다. 도립예술단 전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해충돌 방지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므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p>	

2-1.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필요성

- (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내용과 원인
 - 도립예술단 전형은 공공예술단체 구성원을 선발하는 절차로 예술성·전문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중요
 - 현행 조례상 전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부재로 전형위원이 응시자 또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심의 참여 가능성 존재
- (2) 문제해결을 위한 자치규제의 필요성
 - 전형위원회는 단위 등 선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심의기구로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명확한 절차 필요
 -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이해관계 있는 위원들의 심의 참여 사전 차단 등 전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2-2. 자치규제의 목표·기대효과

- (1) 자치규제의 미래의 비전과 정량적 목표·기대효과
 - 규제목표
 - 전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 현행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제고
 - 도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 강화
 - 기대효과
 - 이해관계 있는 전형위원의 심의 참여 방지
 -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 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
 - 농성북도 및 도립예술단 행정 신뢰도 제고
- (2) 기존규제로의 대체여부 및 현 신설·강화 등 이외의 대안
 - 기존규제로의 대체 여부
 - 현행 조례에 제척·기피·회피 관련 명시 규정 없음
 - 기존 규정만으로 대체 곤란
 - 대안검토
 - 위원들의 심의 참여 제한 및 당사자의 기피신청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내부지침만으로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 우려
 -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판단

2-3.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전형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의결 참여를 제한하고,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
-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전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피규제자인 전형위원회에 별도의 금전적 부담이나 과도한 행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단됨
- 반면, 이를 통해 전형의 공정성 확보, 이해충돌 방지, 응시자의 권익 보호, 민원·분쟁 예방이라는 공익적 효과가 기대
- 따라서 규제 목적에 비해 수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비용보다 공익적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2-4. 자치규제의 지역경제로의 영향·파급효과 (* 하기 각 내용 중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1) 경쟁제한 요소에 대한 검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로 인해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사업자의 경쟁 능력 제한,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감소(협약가입 의무, 사업정보 공개 요구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를 제한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사유	전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 규정으로 경쟁제한 요소 없음

(2) 기업활동으로의 영향 검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도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활동 영향 없음

(3) 우선허용·사후규제 관련 사항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2에 제시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거나 또는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전형위원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 규정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과 직접 관련 없음

2-5. 비용·편익(또는 효과) 분석·비교

(1) 피규제자 및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타 이해당사자

※해당없음

(2)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로서의 영향

구분	영향
피규제자	-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참여 제한 -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필요 - 금전적 비용은 없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의무에 해당
경상북도 및 도립예술단	- 전형 절차의 투명성 강화 - 민원·분쟁 예방- 예술단 운영의 공공성 및 행정 신뢰도 제고

(3) 이해당사자별 비용(규제집행·감시비용 및 규제순응비용) ※ 해당없음

(4) 이해당사자별 편익 또는 효과 ※ 해당없음

(5) 비용과 편익(또는 효과)의 비교

- 본 규제는 전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부담은 심의 참여 제한 및 회피의무 등 절차적 의무에 한정됨
- 별도의 금전적 비용이나 과도한 행정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반면, 전형 절차의 공정성 확보, 응시자의 권익 보호, 이해충돌 방지, 민원·분쟁 예방,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큼.
- 따라서 비용 대비 편익 또는 효과가 큰 규제라 판단됨.

2-6. 정책적 고려사항

(1) 자치규제 정비계획

자치규제의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피규제자 등 이해당사자 또는 주민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규제정비 추진사항 또는 계획은 고려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 규정으로 별도 부담 상쇄를 위한 규제 정비계획 필요성 낮음

(2) 현재 기술수준 및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피규제자가 기술적 또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전형위원이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회피하는 절차적 사항으로 규제순응 곤란 가능성 낮음

(3) 이해당사자 협의·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자치법규 제·개정 전 피규제자 및 규제수혜자, 이해당사자의 협의, 의견수렴 또는 공론화 절차를 수행하였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예정

피규제자 또는 규제수혜자, 기타 이해당사자가 신설·강화하는 규제에 대해 자치법규 제·개정 전 반대하거나 실익이 없다거나 또는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실익이 없다는 의견 또는 우려 의견 제시 사례 없음

자치법규 제·개정 전 자치법규 제·개정 전 피규제자 또는 규제수혜자, 기타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반영되었나? ※ 반대 또는 우려되는 의견이 없는 경우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 제출 시 검토 예정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전형 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 결정

(4) 유사사례 검토결과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에서 제척·기피·회피 규정 운영 사례 다수검토 하였으며,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보장을 위한 일반적 절차 규정에 해당

(5) 자치규제 신설·강화시 행정적 영향요인 및 예상 애로사항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로 인해 피규제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행정 절차 등을 간소화할 여지는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제척·기피·회피 절차는 공정한 전형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로 불필요한 행정 부담으로 보기 어려움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소속된 자치단체의 집행·감시에 있어서 인력·예산 등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이 예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위원회 운영예산을 활용해 충분히 처리 가능

(6) 규제대안의 대체가능성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상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자치규제의 경우, 상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도립예술단 설치·운영에 관한 자치사무 범위 내 사항으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임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예: 자율규제, 강제 조항보다 과태료·벌칙금 등 경제적 유인방식 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위원의 심의 참여 제한 및 당사자의 기피신청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수단은 제한적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해당 규제대안의 존속기한, 재검토 기한과 그 사유는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전형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절차 규정으로 도립예술단 전형이 계속 운영될 수 있어 지속적 필요성 있어 특정 시점 이후 규제 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 별도 설정 필요성 낮음

3-1. 분석결과 요약

구분	[정성적 분석결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규제당국 (지자체)	- 전형위원회 운영 시 제척·기피·회피 여부 확인 필요 -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 절차 진행 - 기존 전형위원회 운영 절차 내 처리가 가능하여 추가 인력·예산 부담은 경미
피규제자	-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참여 제한 -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의무 발생 - 위원회의 권리·의무에 일부 영향을 미치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제한
규제수혜자 등 이해당사자	- 응시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 전형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전형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민원·분쟁 예방 및 도립예술단 운영의 공공성 강화

3-2. 기타 의견

- 본 규제는 도립예술단 전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규제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3-3. 별첨

※ 해당없음



시 군

고 시

김천시 고시 제2026-79호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부곡동 일원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 설	중 로	1	72	25	보조 간선 도로	89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중로1-71	대로1-1	일반 도로	-	-	

■ 교통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중로1-72	· 도로 신설 B = 25m, L = 89m	·부곡동 대단지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편의성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도로 신설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도서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김천시청 도로철도과(054-420-6878), 균형개발과(054-420-6717)

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김천시 고시 제2026-80호

김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부곡동 일원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1)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3,615.3	-	213,615.3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19,045.3	-	119,045.3	55.7	
	단독주택	36,579.4	-	36,579.4	17.1	
	공동주택	77,678.5	-	77,678.5	36.4	
	근린생활시설	4,787.4	-	4,787.4	2.2	
공공 시설 용지	소계	94,570.0	-	94,570.0	44.3	
	공공청사	2,346.3	-	2,346.3	1.1	
	학교	12,035.1	-	12,035.1	5.6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교
	공원	19,997.9	감) 1,901.0	18,096.9	8.5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녹지	6,981.3	감) 2.0	6,979.3	3.3	8개소
	주차장	2,130.0	증) 924.0	3,054.0	1.4	1개소 → 2개소
	도로	51,079.4	증) 979.0	52,058.4	24.4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71	25	보조간선 도로	27	중로2-18	중로1-72	일반 도로	-	-	

※ 그 외 도시계획도로(변경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중로1-71	·도로 신설 - B = 25m, L = 27m	·부곡동 대단지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편의성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도로 신설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26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곡동 877-1일원	924.0	-	

※ 그 외 주차장(변경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6	주차장	·주차장 신설 - A = 924.0㎡	·부곡동 대단지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편의성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및 현재 사용중인 공원 주차장 반영을 위하여 주차장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부곡근린 공원	근린공원	부곡동 1016-2 일원	14,653.0	감) 1,901.0	12,752.0	경상북도고시 제1995-118	

※ 그 외 어린이공원(변경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9	근린공원	·근린공원 면적 변경 -A = 14,653.0㎡ → 12,752.0㎡ 감)1,901.0㎡	·부곡동 대단지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편의성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근린공원 축소

나. 공원조성계획

□ 총괄표(변경)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653	감)1,901	12,752	1,024.41	-	1,024.41	1,021.63	-	1,021.63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3,476	감)127	3,349	-	-	-	-	-	-
유희시설	놀이터	251	-	251	-	-	-	-	-	-
운동시설	다목적 운동장 외 1종	2,309	-	2,309	953.8	-	953.8	953.8	-	953.8
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2,548	감)1,685	863	70.61	-	70.61	67.83	-	67.83
녹 지		6,069	감)89	5,980	-	-	-	-	-	-

□ 시설 결정(변경)조서

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규모 수량	시설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기정	14,653		1,024.41	1,021.63	
				변경	12,752		1,024.41	1,021.63	
도로 및 광장	소 계	부곡동	기정	3,476					
			변경	3,349					
	도 로	부곡동	기정	1,795	13				
			변경	1,689	12				
	광 장	부곡동	기정	1,681	7				
			변경	1,660	7				

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규모 수량	시설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1-1	광장A	부곡동	244					
	1-2	광장B	부곡동	381					
	1-3	광장C	부곡동	148					
	1-4	광장D	부곡동	71					
	1-5	광장E	부곡동	372					
	1-6	광장F	부곡동	315					
	1-7	광장G	부곡동	기정	150				감)21
			변경	129					
유희시설	2	놀이터	부곡동	251		1			
운동시설	소계		부곡동	2,309					
	5	다목적운동장	부곡동	1,220		1			
	6	게이트볼장	부곡동	1,089		1	953.80	953.80	
편익시설	소 계		부곡동	기정	2,548				감)1,685
				변경	863				
	3	화장실	부곡동	205		1	70.61	67.83	
	주 차 장		부곡동	기정	2,343	2			감)1,685
				변경	658	1			
	4-1	주차장A	부곡동	기정	1,685				감)1,685
			변경	-					
4-2	주차장B	부곡동	658						
녹지	녹 지		부곡동	기정	6,069				감)89
				변경	5,980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도로	·도로 면적 변경 -A = 1,795㎡ → 1,689㎡ 감)106.0㎡	·중로1-71호선 신설에 따른 도로 일부폐지
1-7	광장G	·광장 면적 변경 -A = 150㎡ → 129㎡ 감)21㎡	·중로1-71호선 신설에 따른 광장 일부폐지
4-1	주차장A	·주차장 폐지 -A = 1,685㎡	·중로1-71호선 신설에 따른 주차장 일부폐지
-	녹지	·녹지 면적 변경 -A = 6,069㎡ → 5,980㎡ 감)89㎡	·중로1-71호선 신설에 따른 녹지 일부폐지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1,795.0				
변경	합계					1,689.0				A = 1,795.0㎡ → 1,689.0㎡ 감) 106㎡
기정	소로	3	1	8.0	5.0	49.8	진입로			
기정	소로	3	2	4.0	4.0	20.8	진입로			
기정	소로	3	3	3.0	86.0	79.0	진입로			
기정	소로	3	4	1.5	8.0	16.9	진입로			
기정	소로	3	5	1.5	375.0	630.8	진입로			
변경	소로	3	5	1.5	337.0	575.8	진입로			L = 375.0m → 337.0m 감) 38.0m A = 630.8㎡ → 575.8㎡ 감) 55.0㎡
폐지	소로	3	6	1.5	29.0	51.0	진입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1	5.0	20.0	133.7	연결로			
기정	소로	3	2	5.0	20.0	116.8	연결로			
기정	소로	3	3	3.0	85.0	343.3	연결로			
기정	소로	3	4	3.0	38.0	161.2	연결로			
기정	소로	3	5	1.5	42.0	75.4	연결로			
기정	소로	3	6	1.5	40.0	100.1	연결로			
기정	소로	3	7	2.0	6.0	16.2	연결로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5	소로3-5	·진입로 변경 -B = 1.5m, L = 375.0m → B = 1.5m, L = 337.0m 감) L = 38.0m -A = 630.8㎡ → 575.8㎡ 감) A = 55.0㎡	·중로1-71호선 신설에 따른 도로 일부폐지
소로3-6	-	·진입로 폐지 -B = 1.5m, L = 29.0m, A = 51.0㎡	·중로1-71호선 신설에 따른 중첩되는 도로 폐지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나. 학교(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3. 김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김천시청 도로철도과(054-420-6878), 균형개발과(054-420-6717)

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영주시 고시 제2026-116호

영주 도시계획시설(공원 : 광승공원)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영주시 휴천동 산17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승공원)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영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산1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광승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변경: 실시계획인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 259,692㎡
- 실시계획(변경)인가 면적
 - 당초 : 259,692㎡
 - 변경 : 242,234㎡(감 17,458) ※ 공원시설면적은 변경없음.
- 시설개요

구 분	실시계획인가면적(㎡)		비율(%)	건축 및 연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259,692	242,234	100.0	-	감) 17,458
공원시설면적 계	2,484	2,484	1.0	-	-
도로 및 광장	2,484	2,484	1.0	-	-
휴양시설	-	-	-	-	-
운동시설	-	-	-	-	-
녹지	257,208	239,750	99.0	-	감) 17,458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성 명 : 경상북도 영주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2동), 영주시청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20. 6. 29.)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 인가일로부터 2년간

※ 실시계획(변경) 인가일 : 2025. 6. 2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총면적)**

- (당초) 총 면 적 : 105필지, 259,692㎡
- (변경) 총 면 적 : 86필지, 242,234㎡
- (증감) 총 면 적 : 감) 19필지, 17,458㎡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당초·변경 비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자분율	주소	성명	관리의 명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300,852	300,691	259,692	242,234							
1	휴천동	산3-1	임	5,466	5,466	4,229	3,077	영주시 휴천동	남○○○	1				
2	"	산3-4	임	1,323	1,323	1,043	1,043		영주시	1				
3	"	산3-5	임	97	97	97	97		영주시	1				
4	"	산4-1	임	20,996	20,996	20,996	20,996		영주시	1				
5	"	산4-27	임	2,817	2,817	2,817	2,817		영주시	1				
6	"	산4-29	임	24,236	24,236	23,940	23,940		영주시	1				
7	"	산5-2	임	3,042	3,042	2,587	2,587		영주시	1				
8	"	산10	임	8,727	8,727	8,727	8,72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이○○	1/4				
								평로	김○○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김○○	1/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관리의 명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9	"	산11-1	임	5,632	5,632	5,223	5,223	이○○	1/4					
10	"	산13-2	임	2,579	2,579	2,579	2,579	영주시	1					
11	"	산13-11	임	9,994	9,994	9,994	9,994	영주시	1					
12	"	산13-12	임	8,070	8,070	8,070	8,070	영주시	1					
13	"	산164-1	임	841	841	41	0	영주시	1					
14	"	산165	임	4,745	4,745	4,064	0	영주시 이산면 원리	1					
15	"	산165-1	임	412	412	383	383	영주시	1					165 합 분
16	"	산166	임	22,921	22,921	22,921	22,677	영주시	1					
17	"	산166-1	임	3,340	3,340	3,340	3,340	영주시	1					
18	"	산166-3	임	1,878	1,878	1,878	1,878	영주시	1					
19	"	산167	임	5,058	5,058	3,504	3,504	영주시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관리의 명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0	"	산168	임	7,934	7,934	7,806	7,806	영주시	영주시	1					
21	"	산169	임	8,133	8,133	8,032	8,032	영주시	영주시	1					
22	"	산170	임	11,421	11,421	5,790	0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검무로	박○○	5638/11421					
23	"	산171	임	1,686	1,686	1,526	1,526	영주시	영주시	1					
24	"	산172	임	24,011	24,011	24,011	24,011	영주시	영주시	1					
25	"	산173	임	3,967	3,967	3,967	3,967	영주면 영주리	김○○	1					등기X
26	"	산174	임	9,987	9,987	8,973	8,973	영주시	영주시	1					
27	"	산174-1	임	1,914	1,914	1,914	1,914	영주시 하망동	김○○	1/2					
28	"	산175-1	임	7,397	7,397	7,397	7,397	영주시 후천동	김○○	1/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관리의 명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9	"	산176	임	7,068	0	6,296	0		영주시	1						
30	"	산176-4	임	0	5,921	0	5,921		영주시	1					176 분할	
31	"	산177	임	1,587	1,587	1,587	1,587	영주시 하망동	전○○	1						
32	"	산178	임	13,091	13,091	13,046	13,046		영주시	1						
33	"	산179	임	5,950	5,950	5,932	5,932		영주시	1						
34	"	산180	임	1,050	0	1,050	0	영주시 영주동	임○○	1						
35	"	산180-2	임	1,985	1,985	1,158	0		영주시	1						
36	"	산180-3	임	635	635	609	0		영주시	1						
37	"	산180-6	임	0	894	0	894		영주시	1					180 분할	
38	"	산180-7	임	0	715	0	715		영주시	1					180-2 분할	
39	"	산180-8	임	0	265	0	265		영주시	1					180-3 분할	
40	"	산212	도	510	510	215	215		국 (건설부)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관리의 명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41	"	121-4	전	380	380	380	380	영주시	1					
42	"	121-5	전	294	294	294	294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전○○	1/56					
43	"	121-18	전	215	215	163	163	영주시	1					
44	"	165-26	도	224	224	56	56	영주시	1					
45	"	175-1	전	387	387	387	387	영주시	1					
46	"	175-2	전	299	299	212	212	영주시	1					
47	"	176-1	대	496	496	496	496	영주시	1					
48	"	176-2	전	357	357	357	357	영주시	1					
49	"	176-3	전	1,427	1,427	1,395	1,395	영주시	1					
50	"	177	전	89	89	89	89	군포시 당동 송○○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자분율	주소	성명	관리의 명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51	"	178	전	301	301	301	301	영주시 선비로	송○○	1/2				
52	"	179	전	205	205	205	205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송○○	1/2				
53	"	180	전	225	225	225	225	군포시 당동	송○○	1				
54	"	181	전	1,286	1,286	1,286	1,286	군포시 당동	송○○	1				
55	"	181-1	전	1,938	1,938	1,938	1,938	영주시 휴천동	영주시	1				
56	"	182	전	529	529	529	529	영주시	서○○	1				
57	"	183-1	전	701	701	701	701	영주시	영주시	1				
58	"	183-2	전	952	952	864	864	영주시 이산면 간운로	송○○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송○○	2/5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성3로	송○○	2/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자본율	주소	성명	권리의 명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59	"	183-3	전	886	886	16	16	영주시 휴천동	송○○	1								
60	"	199-1	전	162	162	162	162	영주시	영주시	1								
61	"	200	전	1,732	1,732	44	44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송○○	1								
62	"	406-10	전	355	355	355	355	영주시	영주시	1								
63	"	409-1	과	2,545	2,545	324	0	단양군	대○○○	199/ 2545								
								영춘면 배자리	○○○									
64	"	409-2	전	780	780	743	743	영주시	채○○	2346/2545						등기X		
								휴천동										
65	"	409-3	전	1,686	1,686	226	0	서울특별시	영주시	1/2								
								서초구	송○○									
								방배중앙로										
								경기도	영주영	1/2							근저당 권자	
							고양시	영남	경상북도 영주시 꽃동산로 421-1									영주영 신용협 등조합
								퇴양구	오○○									지상 권자
								성신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당초	변경	편입면적(㎡)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권리의 명세	
66	"	409-4	전	6,592	6,592	349	33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송○○	1/2	경상북도 영주시 꽃동산로 421-1	영주 영남 신용협 동조합	근저당 권자	
67	"	409-5	전	837	837	619	619	경기도 고양시 터양구 성신로	오○○	1/2	경상북도 영주시 꽃동산로 421-1	영주 영남 신용협 동조합	근저당 권자	
68	"	638	구	1,037	1,037	32	0		국 (채무부)	1				
69	"	638-4	구	1,003	1,087	376	376		국 (채무부)	1				
70	"	638-5	구	661	689	49	49		국 (채무부)	1				
71	"	1176	전	53	53	53	0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김○○	1				
72	"	1177	전	136	136	136	136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김○○	1				등기X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자분율	주소	성명	권리의 명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73	"	1178	전	76	76	76	0	영주시	영주시	1				
74	"	1179	전	86	86	76	0	영주시 중앙로	장○	1				
75	"	1180	전	777	763	777	763	영주시 중앙로	장○	1				등기X
76	"	1181	전	542	542	19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양○○	1				
77	"	1183	대	1,497	1,497	642	0	영주시 중앙로	장○	1				
78	"	1647	대	304	304	304	0	영주시 휴천동	유○○	1				
79	"	1648	대	410	410	410	0	영주시 휴천동	유○○	1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신영주시점)	농협 은행 주식 회사	근저당 권자	
80	"	1649	전	664	664	580	0	영주시	영주시	1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신영주시점)	농협 은행 주식 회사	지상 권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당초	변경	편입면적(㎡)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관리의 명세	
81	"	1650	전	1,246	1,246	1,246	0	영주시 휴천동	유○○	1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신영주시점)	농협 은행 주식 회사	근저당 권자	
82	"	1667-1	전	52	52	52	52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영농 조합법인	1				
83	"	1671	전	3,273	3,273	3,159	3,159	영주시	영주시	1				
84	"	1672	전	2,298	2,298	2,298	2,298	영주시 휴천동	안○○	1				
85	"	1673	전	674	674	674	674	영주시 휴천동	박○○	1				
86	"	1674	전	506	506	506	506	영주시 이산면 원리	정○○	1				등기X
87	"	1675	전	102	102	102	102	영주시 휴천동	송○○	1				등기X
88	"	1676	전	119	119	119	119	영주시 이산면 원리	정○○	1				등기X
89	"	1677	전	46	46	46	46	영주시 휴천동	박○○	1				등기X
90	"	1678	전	50	50	50	50	영주시 휴천동	송○○	1				등기X
91	"	1679	전	2,205	2,205	2,205	2,205	영주시 휴천동	최○○	1				등기X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당초	변경	편입면적(㎡)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권리의 명세		
92	"	1680	전	605	605	605	605	영주시 휴천동	송○○	1					등기X
93	"	1681	전	1,696	1,696	1,696	1,696	영주시 휴천동	박○○	1					
94	"	1682	전	179	179	179	17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권○○	1					
95	"	1683	전	3,008	3,008	1,016	1,016	영주시 휴천동	김○○	1					
96	"	1684	전	2,069	2,069	2,060	2,060	영주시 휴천동	박○○	1					
97	"	1685	전	909	909	54	54	영주시 이산면 원리	강○○	1					
98	"	1686	전	179	179	17	17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권○○	1					
99	"	1687	전	2,962	2,962	175	0	영주시 휴천동	장○○	1322/2962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남○○	496/2962					
100	"	1689	전	139	139	139	139	영주시 문수면 승문리	정○○	496/2962					
								영주시 가흥동	김○○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관리의 명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01	"	1690	전	159	159	159	159	영주시 가흥동	김○○	1				등기X	
102	"	1691	전	1,243	1,243	466	0	영주시 이산면 원리	강○○	1					
103	"	1693	전	1,506	1,506	158	0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민○○	1/2				등기X	
104	"	1693-1	전	183	183	46	0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영주시	1					
105	"	1716	전	169	169	169	169	영주시	영주시	1					
106	"	1955-11	도	864	864	36	36		국 (건설부)	1					
107	"	1958	구	643	707	244	244		국 (농림부)	1					
108	"	1959-2	도	20	20	20	20		국 (건설부)	1					
109	"	1959-3	도	122	122	8	0		국 (건설부)	1					

※ 본 조서는 당초 및 변경에 따른 토지의 변동사항을 비교하여 작성한 것으로, 분할·합병 등의 이력이 있는 필지는 변경 기준에 따라 재작성되었음.

영천시 고시 제2026-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영천시 망정동 412-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영 천 시 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영천시 망정동 41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교육청 도서관 진입도로(소로1-74호선) 개설공사
- 3) 면적 : 566㎡
- 4) 규모 : 소로1-74호선 도로개설 L=55.0m, B=10.0m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상북도 교육감(경상북도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511

(경상북도 영천시 장수로 18-2)

4.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7.12.30

5.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 외의 관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6. 관계도서는 영천시 도시계획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도시계획과(☎054-330-6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관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로1-74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641	566						
1	망정동	412-2	유	350	192	농림축산 식품부					
2	망정동	523-8	도	977	145	건설부					
3	망정동	532-1	구	314	229	농림축산 식품부					

영천시 고시 제2026-68호

영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영천 도시계획시설인 교통시설(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 6. 4.

영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15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금호 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금호읍 삼호리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하여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내용

사 업 명	노선명 (시설명)	사업시행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금호 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로1-20,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157-2번지 일원	L=406.0m, B=20.0m	인가일~ 2027.12.31	
	중로1-22		L=75.0m, B=20.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영천시 (영천시장)

나. 주 소: 영천시 시청로 16 (문외동)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 2027.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불임(공람장소에 비치)

7. 관계서류 및 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끝.

○ 편입토지 조서(중로1-20호선 외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1	금호읍 삼호리	157-2	답	3	3	영천시	공				
2	"	155-5	전	111	111	영천시	공				
3	"	156-7	과	1,666	1,666	영천시	공				
4	"	155-1	전	23	23	영천시	공				
5	"	156-10	도	169	169	영천시	공				
6	"	산28-6	임	980	980	영천시	공				
7	"	산30-9	임	252	252	영천시	공				
8	"	85-5	도	3,253	3,253	영천시	공				
9	"	85-3	도	848	848	영천시	공				
10	"	산30-7	임	600	600	영천시	공				
11	"	85-8	도	364	364	영천시	공				
12	"	산35-2	임	396	396	영천시	공				
13	"	85-13	도	12	12	영천시	공				
14	"	산35-3	임	7	7	영천시	공				



시 군

공 고

김천시 공고 제2026-1457호

김천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김천시 삼락동 488-3번지 일원 경북보건대학교 부지 내 옹벽 설치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의 열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김 천 시 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가. 위 치 : 김천시 삼락동 48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나. 명 칭 : 경북보건대학교 주차장 및 구조물공사

3. 사업면적 : 3,713㎡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양산학원(대표자: 이은직)

나. 주 소 : 김천시 대학로 168

5. 사업기간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7. 05. 31.

6. 열람 기간 : 2026. 6. 4. ~ 2026. 6. 18. (14일간)

7.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김천시청 균형개발과(☎054-420-641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균형개발과(☎054-420-6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열람내용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고령군 공고 제2026-901호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열람·공고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04일

고 령



1. 공람(열람)기간 : 2026. 06. 04. ~ 06. 18. (14일이상)

2.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명칭	위 치	사업규모(변경)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비고
당초 변경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쌍림 상생교류센터 건설사업	쌍림면 귀원리 206-3번지 외 8필지 일원	A = 3,121㎡	2024. 01. 15. ~ 2026. 12. 31.	
			쌍림면 귀원리 206-3번지 일원	A = 3,130㎡		

※ 변경사유 : 지적불부합 해소 및 토지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경계 및 사업 면적 변경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성명 : 고령군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 계				3,130	3,130	3,121	3,130						
필지수				9필지	1필지	9필지	1필지						
1	쌍림면 귀원리	206-3	대	2,342	3,130	2,342	3,130	고령군 수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2	쌍림면 귀원리	206-12	대	388	0	388	0	고령군 수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3	쌍림면 귀원리	211-7	대	104	0	104	0	고령군 수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4	쌍림면 귀원리	206-7	대	90	0	90	0	고령군 수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5	쌍림면 귀원리	362-7	대	44	0	44	0	고령군 수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6	쌍림면 귀원리	206-13	도	51	0	51	0	고령군 수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7	쌍림면 귀원리	205-8	도	17	0	17	0	고령군 수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8	쌍림면 귀원리	217-1	대	9	0	6	0	고령군 수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9	쌍림면 귀원리	218-9	대	85	0	79	0	고령군 수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5.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관계도서비치 및 공람장소 : 고령군청 도시과
- 의견 제출기간 : 공람(열람)기간 내
- 의견 제출처 : 고령군청 도시과

6. 기타 문의 사항은 고령군청 도시과(054-950-6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